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56
----------	------

제출년월일 : 2012. 2.
제출자 : 충주시장

1. 제안이유

근거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변경되어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심의회 생략요건 중 재산의 취득·처분 기준가격 현실화 및 상향조정(안 제5조 제2항)
 -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 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시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일치되게 조정(안 제12조 제1항)
 - 당초계획 : 당초예산 편성 전까지 → 의결하기 전까지
 - 변경계획 :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까지 → 의결하기 전까지
- 다. 대부분 분할납부 최소금액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일치되게 조정(안 제35조 제2항)
 - 50만원 초과의 경우 3월 이내 2회 분납 → 삭제
- 라.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관리·처분기준」 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요건 조정
(안 제40조 1호 내지 5호)

- “시” 외의 자의 건물로 점유되어 매각할 수 있는 시유지 면적 조정
 - 동지역 1,000m² 이하 → 1,500m² 이하
 - 읍·면지역 2,000m² 이하 → 3,000m² 이하
- “시” 외의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분할매각 면적범위 조정
 - 단독주택일 경우 200m² 이내 →
동지역은 500m² 이내, 읍·면지역은 1,000m² 이내로 한정

마. 변상금 분할납부 최소금액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일치되게 조정(안 제63조 제1항)

- 50만원 초과의 경우 6월 2회 분납 → 삭제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4. 기타 참고자료 : 관계법령

- 덧붙임 1.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3. 관계법령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를 “보존과 관리업무의 체계화·능률화로”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으로, “제14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에 따라”로, “시유재산관리처분”을 “시유재산 관리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을 “매각하려면”으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해당하면”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제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일반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개정2009.10.9>

제5조제2항제4호가목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6조 중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를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처분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으로 한다.

제7조 중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들”을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으로, “양식에 관하여”를 “서식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를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로,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 재산관리 운영”을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을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할 때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제8조제2항제6호 중 “설치여부”를 “설치 여부”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관리대장”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으로, “대부시”를 “대부 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를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을 “잘못을 고쳐야 하는 사항이 있으면”으로, “시정하는”을 “바로 잡는”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어 관리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별히 필요하지 않으면 처분하고 가능한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 중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을 “재정수익을 증대할”로,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를 “계속하여 보존하고 관리하여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을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에 시장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0조와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다음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시장이 충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후단 중 “시는”을 “때에는”으로,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전담부서에서 하여야”를 “전담부서에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공유림에 대해서는”을 “공유림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

정에 의하여”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를 “취득(보상취득)해야”로, “있을 때에는”을 “있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되었을 때와 이 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를 “제1항의 토지”로 한다.

제17조 중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를 “영 제17조를 따르며”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행정재산은”으로, “하여야 하며, 당해”를 “사용을 허가하여야 하며, 허가 할 때에 해당”으로,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를 “명백히 밝혀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를 “해당할 때에는 사용·수익 허가를 해서는 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초래할”을 “가져올”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허가할”을 “허가 할”로, “명시하여야”를 “분명하게 밝혀야”로 한다.

제21조 전단 중 “비치하고”를 “갖춰 놓고”로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할 때에는 영 제19조와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 범위,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2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대하여”를 “대해”로, “전대하는”을 “전대할”로,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을 “정한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를 “이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인정하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결정하

는 경우에는”을 “결정할 때에는”으로, “법 제27조제2항 및”을 “법 제27조제4항과”로 하고, “의하여”를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로, “내구년수”를 “내구연수”로 한다.

제23조 전단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제25조 내지 제37조”를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로 한다.

제24조 전단 중 “명백히 하여”를 “명백히 밝혀”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재산으로서”를 “재산을”로,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를 “않았거나 관리를 게을리”로,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를 “감소되었으면 법 제35조에 따라”로, “환수 및 기타”를 “환수와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재산이라도 공공용·공용·공익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등으로 인하여”를 “등으로”로 한다.

제26조 중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 규정”을 “제39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으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제26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제27조제3호 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8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특수목적 및 업종별”을 “특수목적·업종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31조에 따른”으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를 “있지 않으면 해당”으로, “대부의 경우에는”을 “대부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면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로, “개발사업시행자”를 “개발사업 시행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할 때 <개정 2009.10.9>

제28조제4항제6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신축하는”을 “신축할”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입방미터”를 “세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를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관련단체 및 조합”을 “관련단체 · 조합”으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를 “그 밖에 가격평정에”로,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을 “인정하는 토석에는”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건물평가액 및”을 “건물평가액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을 “불가하면 「건축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를 “대부할 때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건물평가액 및”을 “건물평가액과”로, “건물 및”을 “건물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를 “이때”로, “총면적(건물의 경우는)”을 각각 “총면적(건물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를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를 “이때”로,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첨부하여야”를 “불여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제8항과 영 제35조에 따라”로,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조)”를 “사용·수익허가할 때 대부료나 사용료(이하 이 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국내부품 및”을 “국내부품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가목 내지 마목에”를 “가목부터 마목까지”로, “지역 안”을 “지역”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가목 내지 마목에”를 “가목부터 마목까지”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가목 내지 라목에”를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국내부품 및”을 “국내부품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가목 내지 라목에”를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가목 내지 라목에”를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2조제2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대부하는 경우”를 “대부할 때”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로, “호의 1”을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상당한”을 “상응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취소·해지한”을 “취소·해지하였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를 “귀책사유 때문에 중도 취소·해지되었을 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을 “영 제16조와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으로, “이상 증가하여”를 “이상”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6월”을 “6개월”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9월”을 “9 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를 “제1항과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로, “인정될”을 “일정할”로, “또는 사용료 및”을 “또는 사용료,”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비치하여야야”를 “갖춰 놓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기하여야야”를 “분명하게 기록하여야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매각하는”을 “매각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하는”을 “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으로, “매각하는”을 “매각할”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매각하는”을 “매각할”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는”을 “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로, “공영주택 및 그”를 “공영주택과 그”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를 “매각할 때에는 일반재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로, “1과”를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제13호에 따라 매각할 때

제38조제3항제2호 중 “연장하는”을 “연장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인정하는”을 “인정할”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으로, “당해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을 “해당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로, “필요한”을 “필요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와 제6호에 해당하면”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2조에 따라”로, “이 경우”를 “이때”로, “있는 경우에는”을 “있으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에 따라”로 하고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하며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로 하

고 같은 조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을 “따른 수의
계약”으로, “내용 및”을 “내용과”로, “1과”를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
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
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토지의”를 “토
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4호) 본문 중 “일단의 토지의”를
“일단의 토지”로, “1,000제곱미터”를 “1,500제곱미터”로, “2,000제곱
미터”를 “3,000제곱미터”로, “토지(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토지(동지역은 500제곱미터, 읍·면지역은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하
고, 같은 호 단서 중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1,500제
곱미터 또는 3,000제곱미터”로, “범위내”를 “범위”로,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5호)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1조 전단 중 “영 제48조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48조에 따라”로,
“경우에 있어서”를 “경우에”로, “처분신탁 및”을 “처분신탁과”로 한다.
제43조 중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을 “인정될 때
만 처분하되 경제성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 단서 중 “곤란한 경우에는”을 “곤란할 때는”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2호 중 “표상으로서”를 “표시로서”로 하고, 같은 항 제4
호 중 “충무시설 및”을 “충무시설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등에 대
하여는”을 “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8조 중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주시건축조례」의 규정에 의
하여”를 “건축하려면 「충주시 건축조례」에 따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신축할 때는”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추진하는”을 “추진할”로 한다.
제50조 중 ““관사”라 함은”을 ““관사”란”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1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2조 본문 중 “시장이 이를”을 “시장이”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를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로 한다.

제53조제1호 중 “재산 및”을 “재산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망실 및”을 “망실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세공과금”을 “모든 세금 · 공과금”으로 한다.

제54조 중 “비치”를 “갖춰 놓고”로 한다.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는”을 “있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그 사용”을 “사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5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을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로 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예산에서 이를”을 “예산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신축 · 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을 “신축 · 개축과 증축비, 공작물과”로, “에어콘”을 “에어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관리비(1급 내지 2급)”을 “관리비(1급 또는 2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운영비(1급 내지 2급)”을 “운영비(1급 또는 2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응접셋트, 카텐”을 “응접세트, 커튼”으로, “경비(1급 내지 2급)”을 “경비(1급 또는 2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기요금(1급 또는 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 또는 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 또는 2급 관사에 한한다)

제56조제8호 중 “공동관리비(1급 내지 2급)”을 “공동관리비(1급 또는 2급”으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1조에 따른”으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관사를 일시”를 “관사를”로, “사용”을 “일시로 사용”으로 한다.

제58조 중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2조에 따른”으로,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갖춰 놓고 제56조에 따라”로, “이

에 등재”를 “등재”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제55조의 규정”을 “제55조”로, “취소된 때에는”을 “취소되었을 때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인계하는 때에는”을 “인계할 때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시설장비 및”을 “시설장비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0조 중 “과실로 인하여”를 “과실로”로, “비품(시설장비 및)”을 “비품(시설장비와)”로 한다.

제61조 중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내지 제60조”를 “공용임차주택은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를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려면 해당”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로 하며, 같은 호 나 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를 “제1호를 제외한 그 밖의”로,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후에 보상금을”을 “후에”로, “2인 이상인 경우에는”을 “2명 이상이면”으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를 “자에게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반환자에 대하여”를 “반환자에게”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자인 경우에는”을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를 “신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로 한다.

제65조 중 “자치단체의”를 “자치단체”로, “소관에 속하는”을 “소관”으

로,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를 “있을 때에는 바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한다.

제66조 전단 중 “소관에 속하는”을 “소관”으로, “당해 토지의 형상 및”을 “해당 토지의 형상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이 경우 당해”를 “이 때 해당”으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68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 공유재산 <u>보존</u>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보존과 관리</u> 업무의 체계화·능률화로 ----- ----- ----- -----.
제2조(관리책임) ① · ② (생 략) <u>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제2조(관리책임)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u>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실과소 및 읍면동장에게 시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u> <u>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u>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u>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u>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u> ----- ----- <u>제14조에 따라 -----</u> ----- <u>시유재산 관리처분-----</u> -----. ② <u>제1항에 따라 -----</u> ----- ----- <u>매각하려면 -----</u> -----.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법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법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p> <p>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생 략) 5. <u>기타</u>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는 경우에는</u>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u>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u>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u>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u>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u>2천만원</u>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u>다음 각목의 행정재산·일반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u> 	<p>제16조에 따른 ----- ----- ----- -----.</p> <p>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4. (현행과 같음) 5. <u>그 밖에</u> ----- ----- ----- <p>② ----- ----- <u>해당하면</u>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 <u>제7조제2항</u>----- 2. ----- <u>제57조제1항에 따른</u> ----- ----- 3. ----- <u>3천만원</u> ----- ----- 4. <u>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정재산·일반재산의 용도변경</u>

현 행	개 정 안
<u>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u> <u><개정2009.10.9></u>	<u>또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u> <u><개정2009.10.9></u>
가. 동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 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 는 대장가액 <u>2천만원</u> 이하 의 재산	가.----- ----- ----- <u>3천만원</u> -----
나.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있 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 지 또는 대장가액 <u>2천만원</u> 이하의 재산	나.----- ----- ----- <u>3천만원</u> -----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 리관은 영 제49조에 <u>의하여</u> 공 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 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 ----- <u>따라</u> <u>공유재산의 취득·관리·처분</u> <u>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u> ----- ----- ----- -----.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u>의하여</u> 주민 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u>양식에 관하</u> <u>여</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u>따라</u> 주민----- ----- ----- <u>서식에</u> ----- -----.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u>의거</u>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 상 <u>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u>	제8조(실태조사) ① ----- 법 제44조제2항에 <u>따라</u> 공유 재산의 실태조사를 ----- ----- <u>실시하여 대부재산</u>

현 행	개 정 안
여 대부 재산관리 운영에 만전 을 기하여야 한다.	관리 · 운영-----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 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할 때는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용 · 대부료 수납여부	2. 사용 · 대부료 수납 여부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6. ----- ----- 설치 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 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u>공유재산관</u> <u>리대장</u> 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u>대부시</u> 에는 특별히 유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 ----- ----- <u>공유재산 관리</u> <u>대장</u> ----- ----- <u>대부 시</u>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u>주택재</u> <u>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u>	2. ----- <u>주택</u> <u>재개발사업구역 내</u>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조사결과 <u>시정을 요</u> <u>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u> <u>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u>	④ ----- <u>잘못을</u> <u>고쳐야 하는 사항이 있으면 --</u> -----

현 행	개 정 안
<p>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 을 기하여야 한다.</p> <p>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 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 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 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 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 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 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 보하여야 한다.</p> <p>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p>	<p>----- 때에는 ----- -----.</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 ----- 전담부서에서 ----- ---. ----- 공유림은 ----- -----.</p> <p>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 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 ----- ----- 취득(보상취득)해야 --- ----- 있으면 ----- ----- -----.</p> <p>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되었을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 12조에 따른 -----</p>

현 행	개 정 안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생 략) ② <u>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u>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의 토지</u> ----- ----- -----. -----.
제17조(무상 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u>제17조의 규정에 의하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u>	제17조(무상 사용기간) ----- ----- 영 <u>제17조를 따르며</u> ----- ----- ----- ----- --.
제19조(사용 · 수익허가의 제한) ① <u>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u> <개정 2009. 10.9> ② <u>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 · 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u> <개정 2009.10.9>	제19조(사용 · 수익허가의 제한) ① <u>행정재산은</u> ----- <u>사용을 허가하여야 하며, 허가할 때에 해당</u> ----- ----- <u>명백히 밝혀야</u> -----. ----- ② ----- <u>해당할 때에는 사용 · 수익 허가를 해서는 안</u> -----.

현 행	개 정 안
<p>1. (생 략)</p> <p>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p> <p>제20조(사용 · 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 · 수익 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p><개정 2009.10.9></p> <p>1. ~ 7. (생 략)</p> <p>제21조(사용 · 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 · 수익 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 · 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0.9></p> <p>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 수익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p>	<p>-----</p> <p>1. (현행과 같음)</p> <p>2. -----</p> <p>-----</p> <p>----- 가져올 -----</p> <p>-----</p> <p>제20조(사용 · 수익허가) -----</p> <p>----- 허가 할 -----</p> <p>----- 분명하게 밝혀야 -----</p> <p>-----</p> <p>1. ~ 7. (현행과 같음)</p> <p>제21조(사용 · 수익허가부의 비치) -----</p> <p>-----</p> <p>- 갖춰 놓고-----</p> <p>-----</p> <p>---. -----</p> <p>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p> <p>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할 때에는 영 제19조와 제21조에 따라 사용 · 수익허가의 대상 범위,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p> <p>-----</p>

현 행	개 정 안
0.9>	
② 재산관리관은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u>대하여는</u> 위탁과 동시에 <u>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u>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9.10.9>	② ----- <u>제1항에 따라</u> ----- ----- ----- ----- <u>대해서</u> ----- ----- <u>영 제14조에 따라</u> ----- -----. -----.
③ <u>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u>대하여</u>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u>전대하는</u> 때에는 수탁자가 <u>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u>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u>이 경우</u>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10.9>	③ <u>제1항에 따라</u> ----- ----- ----- <u>대해</u> ----- ----- <u>전대할</u> ----- <u>정한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u> ----- -----. <u>이때</u> ----- -----.
④ <u>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u> 시장이 필요하다고 <u>인정되는 경우에는</u>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u>법 제27조제4항에 따라</u> ----- ----- <u>인정하면</u> ----- ----- -----.
⑤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수	⑤ -----

현 행	개 정 안
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u>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	----- 않았거나 관리를 게을리 ----- 감소되었으면 법 제35조에 따라 ----- ----- <u>환수와 그 밖의</u> -----.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u>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	② ----- <u>재산이라도</u> <u>공공용 · 공용 · 공익사업</u> ----- ----- ----- ----- -----.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u>등으로</u> <u>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u>	③ ----- <u>등으로</u> ----- ----- ----- ----- ----- -----.
제26조(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u>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 투자촉진법」</u>	제26조(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 ----- ----- ----- -- <u>제39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u> ----- ----- <u>「외국인투자 촉진법」</u>

현 행	개 정 안
법」을 준용한다.	-----.
제27조(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9>	제27조(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 ----- ----- ----- -----. -----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 ----- -----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 -----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	4. ----- 제18조에 따라 ----- -----

현 행	개 정 안
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u>특수목적 및 업종별</u>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5. ----- 특수 목적 · 업종별 ----- -----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 ----- -----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 ----- ----- 있지 않으면 해당 ----- ----- ----- ----- ----- 대부는 ----- ----- ----- ----- -----.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② ----- ----- 해당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	③ ----- ----- 해당 -----

현 행	개 정 안
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면 해당 ----- ----- -----.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 ----- 해당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 ----- -----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 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 ----- --- 개발사업 시행자 ----- ----- -----

현 행	개 정 안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개정 2009.10.9>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할 때 <개정 2009.10.9>
6.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3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u>당해</u>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u>신축하는</u> 때 <개정 2009.10.9>	6. ----- ----- ----- ----- <u>해당</u> ----- ----- ----- <u>신축할</u> ----- -----
제30조(토석 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u>입방미터</u>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 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제30조(토석 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 ----- ----- ----- <u>세제곱미터</u> ----- ----- ----- ----- ② ----- <u>원석시가란 생산지</u> 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 ----- ----- -----.

현 행	개 정 안
<p>적)</p> <p>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u>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u>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u>증빙서류</u>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u>첨부하여야 한다</u>.</p> <p>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영 제35조의 규정에 <u>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다음 각 목의 <u>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u></p> <p>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u>의하여 조세 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u></p>	<p>-----</p> <p>⑤ -----</p> <p>-----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 ----- -----. ----- . 이때 ----- ----- --- 증명서류----- ----- 불여야 -----.</p> <p>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 제13조제8항과 영 제35조에 따라 ----- ----- ----- 사용·수익허가할 때 대부료나 ----- 사용료(이하 이 조----- ----- -----.</p> <p>1. ----- 어느 하나에 ----- 해당하면 ----- -----.</p> <p>가.----- --- 제9조에 따라 ----- ----- -----</p>

현 행	개 정 안
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 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 ----- ----- ----- ----- -----
나. ~ 다. (생 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u>국내부품</u>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라. ----- ----- <u>국내부품과</u> ----- ----- -----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바. <u>가목 내지 마목에</u>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u>지역</u>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u>가목부터 마목까지</u> ----- ----- ----- <u>지역</u> ----- -----
사. <u>가목 내지 마목에</u>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u>가목부터 마목까지</u> ----- ----- <u>「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u> 에 따라 ----- -----
2. 다음 각 목의 <u>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u> 대부분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2. ----- <u>어느 하나에 해당하면</u> -----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u>가목 내지 라목에</u> 해당하	마. <u>가목부터 라목까지</u> -----

현 행	개 정 안
는 기존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 ----- -----
바. <u>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u>	비. <u>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u>
3. 다음 각 목의 <u>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u>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3. ----- <u>어느 하나에 해당하면</u> ----- ----- -----.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u>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u>	다. ----- ----- <u>국내부품과</u> ----- ----- -----.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마. <u>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u>	마. <u>가목부터 라목까지</u> ----- ----- -----
바. <u>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사업으로서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u>	바. <u>가목부터 라목까지</u> ----- ----- <u>「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u>

현 행	개 정 안
증설하는 경우	-----
사.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동법시행 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 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2. 그 밖의 -----
③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생 산·연구시설에 대부하는 경우 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9.1 0.9>	③ ----- ----- 대부할 때----- ----- ----- . ----- -----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 · 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 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 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 은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적 합하여야 한다.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 · 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 조제4항에 따라 ----- ----- ----- 호의 어느 하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 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	4. 그 밖에 ----- -----

현 행	개 정 안
하는 재산	-----
<p>② 전세금은 시 금고의 1년 정 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 · 대부료에 <u>상당한</u>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p>	<p>② -----</p> <p>-----</p> <p>----- <u>상응하는</u> -----</p> <p>-----.</p>
<p>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 · 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u>취소 · 해지</u>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 · 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 · 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p>	<p>③ -----</p> <p>-----</p> <p>----- <u>취소 · 해지하였을</u> -----</p> <p>-----.</p> <p>귀책사유 때문에 중도 취소 · 해지되었을 때-----</p> <p>-----.</p>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충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p> <p>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u>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u> <u>에 의하여 당해 사용 · 수익허가</u> <u>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u> <u>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u> <u>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u></p>	<p>④ 제3항에 따른 -----</p> <p>-----</p> <p>-----.</p> <p>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u>영 제16조와 영 제34조에 따라</u> <u>해당 사용 · 수익허가 또는 대부</u> <u>기간 -----</u></p> <p>-----</p> <p>- <u>이상 -----</u></p>

현 행	개 정 안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 ----.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u>비치하여야</u>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명기하여야</u> 한다.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 ----- 갖춰 놓아야 --, ----- ----- ② ----- --- <u>분명하게 기록하여야</u> --.
1. ~ 9. (생 략) 10. <u>기타</u> 필요한 사항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의 -----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단, 제5호의 경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20년 이내의 <u>범위안</u> 에서 연단위로 균등하게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 ----- ----- ----- ----- ----- ----- ----- ----- ----- ----- -- <u>범위</u> ----- ----- ----- 1. ----- ----- ----- <u>매각할</u> --- 2. -----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u>매각하는</u>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현 행	개 정 안
<p>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p>	<p>에 따라 ----- ----- ----- <u>이때</u> ----- ----- ----- ----- ----- ----- 있으면 -----.</p>
<p>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u>지방산업단지</u>,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p>	<p>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에 따라 ----- - <u>일반산업단지</u> - ----- -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 ----- ----- ----- -----</p>
<p>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재산</p>	<p>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u>지식산업센터</u> 내의 재산</p>
<p>3. (생 략)</p>	<p>3. (현행과 같음)</p>
<p>4. (생 략)</p>	<p>4. (현행과 같음)</p>
<p>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u>의한</u>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p>	<p>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 <u>따른</u> 수의계약 ----- ----- <u>내용과</u> ----- ----- <u>어느</u> 하나와 -----.</p>

현 행	개 정 안
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10.9>	----- -----
제43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u>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u> <u>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u> 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 하여야 한다.	제43조(처분의 제한) ----- ----- ----- <u>인정될 때만</u> <u>처분하되 경제성과</u> ----- ----- -----.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② <u>제1항의 규정에 의한</u> 청사정 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 · 도피위험 · 신설기관 · 임차 · 노후 · 협소 · 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 따른</u> ----- ----- ----- -----.
제46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 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u>곤란한 경우에</u> 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 로 할 수 있다.	제46조(청사의 부지) ----- ----- -----. ----- <u>곤란할 때는</u> ----- ----- -----.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 · 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 표의 지방청사 · 종합회관의 표 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 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 ----- ----- ----- -----

현 행	개 정 안
적합하여야 한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사회의 상징적 <u>표상으로</u> 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2. ----- <u>표시로서</u>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u>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u> 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4. <u>충무시설과</u> ----- ----- -----
5. ~ 7. (생 략) ② <u>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u> 규정되지 <u>아니한</u>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u>등에 대하여는</u> 별표 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u>제1항 규정에 의한</u> 별표 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5. ~ 7.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 따라</u> ----- ----- <u>않은</u> ----- ----- ----- <u>등은</u> ----- -----. ③ ----- ----- ----- <u>제1항에 따른</u> --- ----- -----.
제48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u>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u> 「 <u>충주시건축조례</u> 」의 규정에 <u>의하여</u>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8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 <u>건축하려면 「충주시건축조례」에 따라</u> ----- ----- -----.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

현 행	개 정 안
<p>사를 <u>신축하고자</u>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u>범위안</u> 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 야 한다.</p> <p>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u>추진하는</u>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p>	<p>----- <u>신축할 때는</u> ----- ----- <u>범위</u> ----- -----.</p> <p>② ----- ----- <u>추진할</u> ----- -----.</p>
<p>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 라 함은 시장·부시장 또는 기타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 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p>	<p>제50조(정의) ----- “관사”란 ----- <u>그 밖의</u> ----- -----.</p>
<p>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과 같이 구분한다.</p> <p>1. · 2. (생 략)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 기타 관사 등</p>	<p>제51조(관사의 구분) ----- -----.</p> <p>1. · 2. (현행과 같음) 3. ----- <u>그 밖의</u> -----</p>
<p>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u>시장이</u> 이를 허가한다. 다만, 1 급 관사의 사용은 <u>허가를 요하 지 아니한다.</u></p>	<p>제52조(사용허가) ----- ----- ----- <u>시장이</u> -----. ----- <u>허가가 필요하지 않다.</u></p>
<p>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 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 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 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p>	<p>제53조(사용책임) ----- ----- -----</p>

현 행	개 정 안
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
1. <u>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u> 2. 비품의 <u>망실 및 훼손방지</u> 3. (생 략)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u>제세공과금</u> 의 성실한 납부	1. <u>재산과</u> ----- 2. ----- <u>망실과</u> ----- 3. (현행과 같음) 4. ----- ----- <u>모든 세금·공과금</u> -----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u>비치</u> 정리한다.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 ----- ----- ----- ----- <u>갖춰 놓고</u> ----- -----.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u>있는</u>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사용자가 <u>그 사용을 그만둘 때</u> 3. 사용자가 <u>제53조의 규정에 의한</u>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 ----- <u>있을</u> ----- ----- 1. (현행과 같음) 2. ----- <u>사용</u> ----- ----- 3. ----- <u>제53조에 따른</u> ----- ----- ----- -----

현 행	개 정 안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4. 그 밖에 ----- -----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 예산에서 -----.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1. ----- 신축·개축과 증축비, 공작물과 ----- ----- 에어컨 ----- ----- ----- -----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2. ----- 관리비(1급 또는 2급 -----
3. 보일러 운영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3. ----- 운영비(1급 또는 2급 -----
4. 응접셋트, 카덴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커튼 ----- ----- 경비(1급 또는 2급 -----
5. 전기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1급 또는 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6. 전화요금(1급 또는 2급 관사에 한한다)

현 행	개 정 안
7. 수도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7. 수도요금(1급 또는 2급 관사에 한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 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8. ----- 공동 관리비(1급 또는 2급 -----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따른 -----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 일시로 사용-----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 갖춰 놓고 제56조에 따라 ----- 등재 -----.
제59조(인계인수 등) ①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59조(인계인수 등) ① 제55조-----취소되었을 때에 -----.

현 행	개 정 안
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u>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u> 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 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u>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u> ----- -----.
1. 50만원 초과 : 6월 2회 분납	<삭 제>
2. ~ 4. (생 략)	1. ~ 3. (현행 제2호부터 제4호 까지와 같음)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u>영</u> <u>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u>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② ----- --- <u>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u> ----- ----- ----- -----.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 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u>의한</u>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보상금은 3천만원 을 초과할 수 없다.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 상금 지급) ① ----- --- <u>따른 -----</u> ----- ----- -----.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u>자에 대하여는</u> 필지별로 600 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 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 다.	1. ----- --- <u>자에게 -----</u> ----- ----- -----.

현 행	개 정 안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 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 ----- ----- -----
2. <u>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u> 재산을 신고한 <u>자에 대하여는</u>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2. <u>제1호를 제외한 그 밖의</u> -- ----- <u>자에게</u> ----- ----- ----- -----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 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u>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u> 며 신고인이 <u>2인 이상인 경우에</u> <u>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u> <u>으로 한다.</u>	② ----- ----- ----- <u>후에</u> ----- ----- <u>2명 이상이면</u> - ----- <u>자에게 지급한다.</u>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u>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u> 급하지 <u>아니한다.</u>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 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u>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u> 지급할 수 있다.	③ ----- ----- <u>반환자에게</u> ----- ----- <u>않는다.</u> ----- ----- ----- <u>자에게는</u> ----- -----.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u>신고내용은 외부에</u> <u>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u> 된다.	④ ----- ----- <u>신고내용을 외부에</u> <u>공개하거나 누설해-----</u> ---

현 행	개 정 안
<p>제65조(합필의 신청) <u>자치단체의</u> <u>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u> <u>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u> <u>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u> <u>이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u> <u>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u></p> <p>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u>자치단</u> <u>체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u> <u>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u> <u>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u> <u>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u> <u>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u> <u>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u> <u>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u> <u>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u> <u>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u> <u>「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u> <u>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u> <u>가법인에 의뢰한다.</u></p> <p>제68조(시행규칙) 이 <u>조례</u> 시행에 <u>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65조(합필의 신청) <u>자치단체</u>-- ----- <u>소관</u> ----- ----- ----- <u>있을 때에는 바로</u> <u>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u> -----.</p> <p>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 ----- <u>소관</u> ----- ----- ----- ----- <u>해당 토지의 형상과</u> -- ----- ----- <u>. 이때 해당</u> ----- ----- ----- ----- ----- ----- <u>「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u> <u>에 관한 법률」에 따른 ----- -----.</u></p> <p>제68조(시행규칙) - <u>조례의 시행에</u> ----- ----.</p>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 (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체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 (대부료)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 (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공기업과)

제3절 처 분

1. 매 각

나. 매각기준

3)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

가) 다음 어느 하나의 토지(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포함)로서 재산의 위치와 규모·형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체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 입찰·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음

(1)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지역에 있어서는 $1,000m^2$ 이하, 시의 동지역에 있어서는 $1,500m^2$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 있어서는 $3,000m^2$ 이하인 영세 규모의 토지.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어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수자를 결정하여야 함.

나) 일단의 토지 면적이 시 지역에서는 $1,500m^2$, 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3,000m^2$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

(1) 점유·사용되고 있는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 매각

(가)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고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가능하며,

- (나) 위 (1)에 의한 분할 매각시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
- (다) 위 각 항에 따라 최대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은 서울특별시·광역시의 동 지역은 300m^2 , 시의 동 지역은 500m^2 , 기타 읍·면 지역은 $1,000\text{m}^2$ 이내로 한정